

# 평가요약표

<b>기관명</b>	문화체육관광부
<b>사업명</b>	예술의관광자원화
<b>보조유형</b>	민간경상, 지자체경상

평가지표 및 평가기준	평가점수
<b>1. 보조사업의 타당성</b>	<b>44.1</b>
1-1.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	4.6
1-2. 보조사업의 효과성	21.0
1-3. 보조사업의 필요성	12.0
1-4.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	5.5
1-5. 사회적가치 실현	1.0
<b>2.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</b>	<b>3.0</b>
2-1.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	0.0
2-2.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	0.0
2-3.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	7.0
2-4. 자체 사업관리 노력	-3.0
2-5. 평가결과 이행여부	-1.0
2-6. 실집행 실적	0.0

구분	총평
<b>평가결과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높은수준 감축, 사업방식변경</li> <li>- (사업방식변경) 사업 목적 명확화와 내역사업 조정, 내역사업별 대표성 있는 성과 지표 설정 및 관리가 필요함</li> </ul>
<b>평가근거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 내역사업은 보조금 지급제외 사업과 유사하고, 유사한 내역사업인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은 지방이양됨</li> <li>· 전통공연예술활성화 내역사업은 실집행률이 19년 89.3%, 20년 81.3%임</li> <li>· 공연예술해외진출지원 내역사업은 20년 실집행률이 77.6%임</li> <li>· 전통공연예술행사해외진출지원과 공연예술전략적해외진출지원 등은 해외진출지원임에도 다른 내역사업으로 분류됨</li> <li>· 문화공간활용 전통공연사업 고객만족도는 내역사업 대표성 부족하고, 공연예술해외진출 만족도는 목표와 부합성 부족함</li> </ul>
<b>세부 문제점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업 목적 및 지원대상 불명확화로 타 보조사업과 중복 수혜 발생 가능성 존재함</li> <li>· 성과지표 대표성 및 부합성 부족으로 사업목적 달성 평가가 어려움</li> </ul>
<b>개선사항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목적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을 평가하여 세사업과 내역사업을 조정해야 함</li> <li>· 내역사업별로 보조사업만의 대표성 있는 고유의 성과지표를 설정·관리하여 보조사업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함</li> </ul>

# 평가 의견서

## 1. 보조사업의 타당성

### 1-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

- 본 보조사업은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, 전통공연예술활성화, 공연예술해외진출지원이라는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.
-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 내역사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 5조 3항 ‘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’에, 전통공연예술활성화 내역사업과 공연예술해외진출지원 내역사업은 각각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2호와 4호 ‘민족전통문화의 보존·계승 및 발전’ 및 ‘국제 문화예술 교류’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.
  - 다만, 관련 규정은 ‘보조할 수’와 ‘지원에 사용’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고보조의 당위성과 구속력이 부여되진 않음.

#### <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,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>
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 5조(기금의용도)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#### 9.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

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(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)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.

1.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
2. 민족전통문화의 보존·계승 및 발전
4. 국제 문화예술 교류

- 본 사업은 전통문화의 보존·계승·발전을 통한 사업활성화 및 공연예술의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함.
  - 프로그램, 단위사업 등 상위 차원의 목적과 연계하여 세부사업의 대상이 전통문화인지, 전통예술인지, 전통공연예술인지, 공연예술인지를 명확하게 하여 목적을 설정해야 함.
  -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국정과제와 부합하고, 본 보조사업 미제공시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개연성은 있음. 그러나,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개연성 또한 존재함.

## 1-2 보조사업의 효과성

- 전통공연예술활성화, 공연예술해외진출지원 내역사업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.
  - 한옥자원활용야간상설공연과 문화공간활용전통공연사업, 전통공연예술행사해외진출지원과 공연예술전략적해외진출지원은 유사한 내내역사업임에도 각기 다른 내역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사업 목적, 예산 등을 고려해 내역사업 조정이 필요함.
-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예술의 관광자원화 사업 관객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있음.
  - 20년 만족도 목표치 83.0점은 기존 사업 만족도 대비 도전성이 낮음.
  - 내역사업별로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, 문화공간활용 전통공연사업 고객만족도는 전통공연예술활성화 내역사업의 대표성이 부족하고, 공연예술해외진출 만족도는 내역사업 목표와 부합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함.
  - 또한, 만족도는 실집행률과 관계없이 목표달성이 가능한 성과지표이기에, 실집행률을 고려할 수 있는 복합지표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.
  - 내역사업별로 본 보조사업만의 대표성 있는 고유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목표 및 상위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함.
-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, 전통공연예술 제공 등으로 전통공연예술을 활성화하고, 공연예술해외진출지원을 '18년 58,845명에서 '19년 231,054명으로 확대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의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

## 1-3 보조사업의 필요성

- 동일 프로그램 내 유사중복 보조사업은 없으며 보조금 외 용자, 출연 등의 다른 재정지원 방식의 유사중복 사업은 관찰되지 않음.
  - 그러나, 일부 지방자치단체 직접수행, 민간시장의 형태로 유사 서비스 제공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음.
- 연극, 무용, 음악, 전통 등 공연예술전체분야의 창작지원사업인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.
- 내역사업별로 직접 수혜자를 각각 참여지역, 참여예술가, 단체공연수로 정의하고 있음

- 전통공연예술활성화 내역사업 직접 수혜자가 18년 85,708명에서 19년 56,418명으로, 공연 예술해외진출지원 내역사업 직접수혜자가 18년 313건에서 19년 306건으로 감소하였음.
- 전통공연예술사업의 최종 수혜자를 문화예술의 향유자인 지역 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어 관광자원화와의 적합성 낮음. 사업목적에 맞는 직접 수혜자, 실수혜자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사업을 집행·관리함으로써 수혜자 확대 노력을 기울여야 함.

#### 1-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
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기준보조율이 없어, 동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정액을 적용함.
  - 자치단체 보조는 타 유사사업의 경우 보조율이 50% 수준이나, 본 보조사업은 지자체 부담 비율이 64%로 높음.
- 연도별 실적행률은 18년 95.0%, 19년 93.9%, 20년 84.1%임.
  - 3년 평균 실적행률이 90% 이상으로 적정하나, 18년 공연예술해외진출지원은 89.6%, 19년 전통공연예술활성화는 89.3%, 20년 전통공연예술활성화, 공연예술해외진출지원, 지역명소 활용공연지원이 각각 81.3%, 77.6%, 89.7%로 개선 노력이 필요함.
- 내역사업별 기능별(세사업별) 예산은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목표 부합성과 목표달성 기여도 등의 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함.
  -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 내역사업은 보조금 지급제외 사업(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 185.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, 201. 지역문화행사 지원, 202. 지역대표공연예술제)과 유사하고, 내역사업과 유사한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은 지방 이양되었음.
  - 공연예술해외진출지원 내내역사업은 본 사업의 목적과 지원 대상에의 적합성, 수혜자 중복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예산을 조정해야 함.

#### 1-5 사회적가치 실현(가점)

- 전통공연예술의 접점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전통예술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예술의 개발·보존·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전통예술의 경쟁력을 확대함으로써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가 정량적으로 인정됨.
  - 전통예술해외아트마켓 참가 및 해외진출지원 향유자가 18년 58,845명에서 19년 231,054명으로 증가함.

## 2.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

### 2-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

- 본 보조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보조금 운영관리규정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지원사업 실무매뉴얼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.
  - 정동극장,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, 전라북도,(재)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가 사업주관 및 사업수행자로 지정 교부됨.
  - 관련 규정, 매뉴얼, 운영내규에 따라 최종 보조사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함.

### 2-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

- 본 보조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보조금 운영관리규정과 회계감사 지침,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지원사업 실무매뉴얼에 보조사업 집행현황, 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함.
  - (재)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보조사업자에게 문예진흥기금의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교부 및 집행을 점검 함.
  - 상기 규정 이외의 규정을 마련하여 보조사업 집행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 있음.
- 상기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, 중요재산 관리, 정산 및 회계감사, 정보공시 등을 준수하여 관리함.
  - 보조사업자 정보공시, 중요재산 정보공시 해당사항 없음.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내역사업자로 지정되어 있고, 보조사업자를 (재)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등으로 지정함으로써, 사업을 집행·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업 목적 등이 공유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.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과 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이 미흡한 수준임.

### 2-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

- 부정수급방지대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운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(재)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의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함.

- (재)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상기 지침과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.

○ 부정수급 자체적발과 외부적발은 0건임.

-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조사업 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적이 0건임. 문화체육관광부와외의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 유형별 사례 공유, 부정수급 방지 우수 사례 공유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함.

#### 2-4 자체 사업관리 노력(가감점)

○ e나라도움 부정징후 통보 건에 대하여 점검 미실시, 점검기한 미준수, 시스템 미등록이 존재함.

- 점검방식도 개선하여 부정징후 관리 강화가 필요함.

#### 2-5 과거 평가결과 이행 여부(감점)

○ 성과관리 및 질 관리 체계 구축, 부정수급 방지 추가 노력과 관련된 평가결과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.

- 문화공간활용 전통공연사업 고객만족도는 전통공연예술활성화 내역사업의 대표성이 부족하고, 공연예술해외진출 만족도는 내역사업 목표와 부합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함. 또한, 만족도는 수혜자 수나 실집행률과 관련없이 목표 달성 가능하므로, 양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복합지표 등의 개발이 필요함.

- 부정징후 통보 건에 대한 점검 미실시 등 부정수급 방지 추가 노력이 충분하지 않음.

< 표 2-5 > 과거 평가결과 이행 여부

평가결과		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실적
감축	· 단순관람객 수가 아닌 사업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제 구축의 미흡	· '20년도부터 공간지원사업에서 관람객 만족도로 성과지표 개선 ('20년 측정 중)
사업방식 변경	·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이 10개에 이르러 그 내용과 목적이 다양하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추진	· '20년도 부터 지역대표공연예술지원사업 17개 시도로 사업이관('19년 사업비 기준 93억 감축효과) ·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혁신 TF운영('20.8월~12월) - 유관기관사업 및 유사사업 재검토 및 사업개편 · (재)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관계자 간담('20.9.18) - 유사중복사업개편 및 재단 자체사업 구조조정방안에 제안 · '22년 대비 사업개편방안 사업설명회 예정('21.1월 중)

#### 2-6 과거 3개년 실집행 실적(감점)

○ 해당없음.

### 3. 종합 평가 및 제언

#### 3-1 종합 평가

- 본 보조사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, 보조사업으로서 필요성과 목적성은 인정됨.
- 보조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 사업 목적 명확화와 이에 따른 내역사업 조정, 내역사업별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라는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.
- 보조사업 예산 측면에서 높은수준의 감축이 필요함.

#### 3-2 정책 제언

- 본 보조사업은 세사업별로 목적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을 평가하여야 함.
  - 이에 따라 세사업과 내역사업을 조정하여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 등의 유사사업과 차별화를 꾀함으로써 중복 수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것임.
- 내역사업별로 보조사업만의 대표성 있는 고유의 성과지표를 설정·관리하여 보조사업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함
  -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과거 평가결과, 다른 보조사업 평가결과에도 반복·중복 발생함으로 주무부처 등 차원에서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.